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2호로 2021년 6월 7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협 의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1. 6. 2. ~ 6. 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1. 시행)되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2021년 1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미이양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삭제되었음.

시행령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